

32. 체코(Czech Republic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06년(사무직 근로자), 1924년(임금 노동자)
- 현행법 : 1995년(연금보험) 1996년 시행

2. 제도형태

- 보편제도(장제비), 사회보험제도

3. 적용대상

- 보편제도 : EU시민과 법령으로 지정된 인원들을 포함한 체코 영주자
- 사회보험제도
 - 당연적용 : 근로자와 자영자, 군인, 공무원, 학생, 실업자, 간병인, 빈곤층
 - 임의적용 : 실업자와 학생(1995년 법에 의해 강제 가입되지 않은 경우), 국외에서 고용된 근로자, 특정 봉사활동을 하는 자, 1년 이상 가입 이력 있는 18세 이상인 자는 최대 15년 동안 임의가입가능
- 특별적용 : 없음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보편제도 : 없음
 - 사회보험제도 : 월 소득의 6.5%
 - 산정에 적용되는 최대 연소득은 국가 월 평균 임금의 48배
 - 국가 월 평균 임금 29,979 koruna
 - 가입자의 납부액은 산재급여 재원조달에도 사용됨
- 자영자 : 월 신고소득의 28%
 - 보편제도 : 없음
 - 사회보험제도 : 월 신고소득의 28%
 - 월 신고소득은 전년 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의 50%
 - 납부액 산정에 적용되는 최저 연 소득은 전업자영자의 경우 국가월평균임금의 25%의 12배; 자영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국가월평균임금의 10%의 12배
 - 연소득 상한액 : 국가 월 평균 임금(29,979 koruna)의 48배

- 사용자
 - 보편제도 : 없음
 - 사회보험제도 : 임금지급 총액의 21.5%
 - 연소득 상한액 : 국가 월 평균임금(29,979 koruna)의 48배
 - 사용자 납부액 또한 산재수당 재원조달에 사용됨
- 정 부
 - 보편제도 : 전액
 - 사회보험제도 : 결혼금 보충 (특정 학생, 실업자, 간병인, 소외계층 등 대납)
 - 사용자로서 납부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남 : 63세 2개월(최소가입기간 34년)
 - 2030년까지 65세, 2044년까지 67세로 상승 예정
 - 여 : 62세 8개월(최소가입기간 34년)
 - 2030년까지 65세, 2044년까지 67세로 상승 예정
 -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은 자녀수, 가입자 연령에 따라 퇴직연령이 최대 4년까지 감소되며 점차 사라져 1971년 이후 태어난 여성 가입자 부터는 적용되지 않음
 - 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실업/장애수당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를 인정함
 - 2,500 koruna 이하의 소득활동은 퇴직 불필요
 - 비례노령연금 : 정년을 5년 경과하였으며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자
 - 조기연금
 - 정년이 63세 미만인 경우 정년보다 최대 3년 먼저 수령가능
 - 60세 이상인 가입자의 정년이 63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 일찍 수령 가능
 -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26년이 있어야 함
 - 2,500 koruna 이하의 소득활동은 퇴직 불필요
 - 연기연금 : 소득활동을 하는 자는 연금이 연기될 수 있음; 나이제한 없음
 - 해외송금 가능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
 - 65세 이하이며 1급 (소득활동능력 35~49% 상실), 2급 (50~69%), 혹은 3급(70% 이상) 장애를 가진 자
 - 최소가입기간 : 장애발생연령에 따라 다름

- 20세 미만 : 1년 이하
- 20~21세 : 1년
- 22~23세 : 2년
- 24~25세 : 3년
- 26~27세 : 4년
- 28~38세 : 지난 10년 중 5년
- 39~64세 : 지난 20년 중 10년 혹은 지난 10년 중 5년
- 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를 인정함
- 장애연금 수급자는 소득활동 가능
- 65세에 장애연금은 중단되고 노령연금으로 전환
- 체코 사회보장청이 장애등급 평가함
- 모든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해외지급 가능
- 미성년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18세 이전 3급 장애(소득활동능력 70%상실)가 발생한 경우; 최소가입기간 없음
 - 체코 사회보장청이 장애등급 평가함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
 - 연금수급권자가 사망, 혹은 산재 및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
 - 고아연금의 경우 사망자가 장애연금 필요가입기간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거나 지난 10년간 최소 1년, 혹은 38세 이상인 자는 지난 20년간 최소 2년을 납부했어야 함
 - 대상 : 동일연령 남성의 정년보다 4살 이상 젊거나, 3급 장애를 가졌거나, 피부양 자녀/부모 혹은 장애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, 26세 이하의 피부양 자녀
 - 유족연금의 해외 지급 가능
 - 재혼할 경우 지급정지
 - 해외지급 가능
- 장제비 : 피부양 자녀의 장례비를 지불한 자 혹은 피부양 자녀의 부모에게 지급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액은 2,700 koruna 정액급여와 가입기간 1년당 개인평가기준금액 (personal assessment base)의 1.5%인 소득비례액으로 구성됨
 - 개인평가기준금액 : 1986년 이후 또는 가입자가 18세가 된 연도 중 나중인

연도부터의 소득의 평균치; 가입소득은 평균소득에 맞춰 조정됨

- 가입으로 인정된 기간은 개인평가기준금액을 산정시 고려되지 않음
- 개인평균기준금액이 13,191 koruna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이 반영됨
 - 소득액 13,191 koruna까지는 100%
 - 소득액 13,191 koruna ~ 119,916 koruna, 26%
 - 소득액 119,916 koruna 이상은 119,916 koruna 로 적용
- 최소연금수급월액 : 없음
- 비례노령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산정
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 이상인 자는 정상퇴직연령 도달 3년 전부터 신청가능. 연금액은 정년보다 1~360일 일찍 수령할 경우 90일당 0.9%씩, 361~720일은 1.2%씩, 그리고 721일 이상은 1.5%씩 감액됨.
- 연기연금 : 노령연금을 연기하는 기간 90일당 개인평가기준금액의 1.5%씩 가산됨
- 연금액 조정 :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의 100%와 평균임금상승률의 50%를 반영. 물가상승률이 최소 5%이상 변경되거나 조정으로 인해 평균 노령연금이 2.7%미만 상승하게 될 경우 추가 조정 가능.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액은 2,700 koruna 정액급여와 가입기간 1년당 개인평가기준금액 (personal assessment base)의 일정비율인 소득비례액으로 구성됨
 - 1급 장애는 0.5%, 2급 장애는 0.75%, 3급 장애는 1.5%
- 기대연금가입기간은 장애발생시점부터 퇴직연령까지 인정됨
- 개인평가기준금액 : 1986년과 가입자가 18세가 된 연도 중 나중인 연도부터의 소득의 평균치; 신고소득은 평균소득에 맞춰 조정됨
- 가입으로 인정된 기간은 개인평가기준금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음
- 개인 기준평가액이 13,191 koruna를 초과할 경우 연금액 산정을 위한 소득은 이하 기준에 따라 산정
 - 소득액 13,191 koruna까지는 100%
 - 소득액 13,191 koruna~ 119,916 koruna, 26%
 - 평가에서 소득은 최대 119,916 koruna 까지만 인정됨
- 미성년장애연금
 - 미성년장애연금액은 2,700 koruna 정액급여와 개인평가기준금액 45%의 소득비례액으로 구성됨
 - 개인평가기준금액은 월평균국가임금에 기반을 두어 산정됨

- 월평균국가임금은 29,979 koruna
- 연금액 조정 :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의 100%와 평균임금상승률의 50%를 반영. 물가상승률이 최소 5%이상 변경되거나 조정으로 인해 평균 노령연금이 2.7%미만 상승하게 될 경우 추가 조정 가능.

○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배우자연금
 - 월 정액급여 2,700 koruna 와 사망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비례액의 50%를 정년보다 4년 이상 어리거나, 3급 장애가 있거나, 피부양 자녀, 부모, 또는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
 - 여타 배우자에게는 1년간 제한된 연금을 지급
- 고아연금
 - 월 정액급여 2,700 koruna 와 사망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비례액의 40% 각 피부양 자녀에게 지급
 - 완전고아의 경우 월 정액급여 및 양쪽 부모의 소득비례액 합산액의 40%
 - 유족이 본인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생길 경우, 총 지급되는 연금액은 두 연금 중 더 높은 액수의 것 + 나머지 연금의 소득비례액의 50% 지급
 - 연금액 조정 :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의 100%와 평균임금상승률의 50%를 반영. 물가상승률이 최소 5%이상 변경되거나 조정으로 인해 평균 노령연금이 2.7%미만 상승하게 될 경우 추가 조정 가능.
- 장제비 : 5,000 koruna를 일시금으로 지급

7. 관리운영기관

- 노동사회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)
 - <http://www.mpsv.cz>
 - 연금제도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 감독 및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장 분야 관련 정책 개발
- 체코사회보장청(Czech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)
 - <http://www.cssz.cz>
 - 중앙기관(Central Administration) 과 77개의 지역기관(District Administration)을 통한 보험료 징수 및 관리, 급여의 지급
 - 장례지원금은 노동청에서 관리